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⑥

VI. 결어

○그동안 동성애자들은 페미니스트 좌파 이념의 운동 가들과 연대하여 '성도덕 해체 → 가족 해체 → 기독교 해체'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런 노력의 '결정적 성과'를 거두는 것을 의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판 또는 죄악시 하는 윤리적·종교적 설교를 금지하고 동성혼을 사실상 합법화시키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가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

- 동성애와 동성혼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일 뿐 아니라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배치

- 또한 차별금지법은 소위 '성평등'을 내세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이 이보다 상위에서는 '제왕적 가치(인권)'로 만들 가능성

○동성애 등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미움과 혐오와 배척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이들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며 자의적인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보호하면 되는 것이지,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의 패권적 지위 혹은 '성평등' 독재'의 인정, 즉 성평등을 내세워 복음을 따르는 교회·목회자·평신도들의 입을 봉쇄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 배치

- 동성애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있어선 안 되지만, 자유민주헌법의 핵심가치인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해야 마땅

○차별금지법이 제정·실시될 경우 모든 국민(특히 기독교인)의 언행, 사고, 일거수일투족이 차별사유로 화하고 모든 국민을 기해자와 피해자, 감시자와 피감시자, 고발자와 피고발자, 범죄자와 심판자(여론재판 포함) 등으로 분열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초강대사회의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이렇게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신규 제정보다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대처하되, 법에 의한 타율적 강제보다는 차별하지 않는 자발적 문화와 행위를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

○이와 관련 동성애 문제를 성적 지향상의 '다름(차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좋은과 나쁜(Good or Bad)'의 문제,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Natural or Unnatural)'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

-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인류에게 해악을 가져왔기에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절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예언자의 사명과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중대한 시기

- 차별금지법 하에서 교회는 기독교의 본질을 지킬 수가 없고, 왜곡내지 기형화의 모습을 필 수밖에 없기 때문 (자료 1) 차별금지법안(2020.6.29.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제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출신지역"이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를 말한다.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 성을 말한다.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6. "학력(學歷)"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의 이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력 또는 학위의 취득, 「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제47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포함한 수학 경력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이수 여부를 말한다.
7. "고용형태"란 직업의 종류를 불분하고 임금을 목

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그 밖에 통상근로 이외의 근로형태를 말한다.

8. "병력"이란 치유된 질병,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만 관리가 잘 되거나 원래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9.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 학교
-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0.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11.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직업의 종류를 불분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 다.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
- 1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

나.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지급의 용사,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 나. 지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 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 라.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2.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조래된 경우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의 공여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4.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성하는 광고 행위
6. 2가지 이상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
- ②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 제6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사유는 차별의 원인이 된 모든사유에 각각 존치하여야 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그 핵심적인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과도한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①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및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6조(차별시정기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분계획(이하 "기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3. 제1호의 차별시정정책의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실행조치, 교육훈련, 홍보 등의 조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는 활동을 허위로 매도하는 뉴스앤조이 거짓 기사에 대한 입장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는 지난해 12월 24일(목)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독교 언론을 표방하면서 오히려 기독교 교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뉴스앤조이와 이윤에 기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의 가시행의 상황을 소개한 '이프페밀리'에 대해 '차별금지법에는 전도활동을 제재하는 조항이 없다. 전도나 설교 등은 차별금지법상 광고가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없는 지금도 경우에 따라 노방전도는 제재된다'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음법률가회는 "이것은 법률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거짓 주장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대타회 무책임한 주장"이라면서 "뉴스앤조이 이윤에 기저의 주장도 이 사안과 관련이 없는 사례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한 우려는 고사하고 '이프페밀리'의 내용을 허위라고 매도하고 여기에 출연한 연기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는 기사를 보도한 뉴스앤조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복음법률가회는 뉴스앤조이와 이윤에 기저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복음법률가회는 "거짓 뉴스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는 성도들의 활동을 허위로 몰아 매도하는 행위들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주요내용.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는 성도들의 활동을 허위로 매도하는 거짓 기사를 즉각 중단하라

성경과 해외에서 벌어진 차별금지법 폐해사례들을 근거로 국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온 기독교인들의 주장들을 '동성애 혐오자들'의 '가짜뉴스'로 매도해 오던 뉴스앤조이가 이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여준 가상성 드라마 '이프페밀리(유사무열 감독)' 내용까지 가짜로 몰아세우고 나섰다.

뉴스앤조이 이윤에 기저는 2020.12.23자 "팩트체크 임종진·조혜연씨 그거 사실 아닙니다" 제목의 기사에서, 드라마 내용 중 노방전도와 관련된 선교의 자유 침해사태가 차별금지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를 허위로 몰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은 포괄적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복음법률가회의 전 헌법재판관, 헌법학 교수, 형법학 교수, 국내 및 외국 변호사 등 각 분야 법률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며, 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해외에서도 사실상 드러난 사례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뉴스앤조이 이윤에 기저가 위 기사에서 부당하게 '이프페밀리'를 매도한 주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뉴스앤조이 이윤에 기저는 차별금지법에는 전도활동을 제재하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거짓 주장이다.

둘째, 전도나 설교 등은 차별금지법상 '광고'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조항을 만들지는 뉴스앤조이 이윤에 기저의 주장 또한 '아니면 말고' 식의 대타회 무책임한 주장이다.

셋째, 차별금지법이 없는 지금도 경우에 따라 노방전도는 제재된다는 뉴스앤조이 이윤에 기저의 주장도 이 사안과 관련이 없는 사례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공공장소에서 전도행위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고 이러한 법 위반 가능성이 가시적 드라마 형식으로 연출된 '이프페밀리'의 공공장소 전도행위 부분 또한 정당하다.

성경을 믿는 성도라면 신앙의 자유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준 '이프페밀리'를 보며 감격하고 안타까워해야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한 우려는 고사하고, '이프페밀리'의 내용을 허위라고 매도하고 여기에 출연한 연기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는 기사를 보도한 뉴스앤조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복음법률가회 소속 법학자들과 실무자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들을 허위로 단정하여 가짜로 몰아기는 보도에 대하여도 엄중히 경고하는 바다.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각 영역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동역자들의 호소를 혐오자들의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는 뉴스앤조이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지칭하는 것이 주님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부끄러워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복음법률가회는 뉴스앤조이가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는 성도들의 활동을 허위라고 매도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금번과 같이 거짓 뉴스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는 성도들의 활동을 허위로 몰아 매도하는 행위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0. 12. 22.

복음법률가회 일동 상임대표 조배숙 공동대표 김승규, 김명훈, 김일수, 두성달, 서한제, 안창호, 전용태, 조대현, 최대길 운영위원 고영일, 김원경, 김영길, 김윤숙, 김지연, 명재진, 박진홍, 신영희, 심동섭, 윤선민, 이명진, 이상원, 이상현, 이윤희, 이호선, 임원철, 정소영, 제양규, 조영길, 지영준, 한효관, 홍호수

특별기고문 차별금지법 반대

전용태 변호사 // 전용태 장로,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 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 할 수는 없다

1. 법은 최소한의 도덕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에 대해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를 가하는 규범이며, 법이 보장하는 인권도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전부의 인간의 권리이다.

법이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가의 여부는 이러한 법과 인권의 개념과 그 나라 문화와 국민의 윤리의식에 따라 결정할 형사정책의 문제이다.

그래서 법이 형사정책상 부도덕한(immoral) 행위를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도덕과 무관한 것(normoral)으로 만드는 비도덕화(demoralization)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독일의 근대 법학자 엘리네크(G. Jellinek)가정을 내린 바와 같이 법은 '최소한의 도덕'으로서, 법은 그 내면적 도덕성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고, 또한 국민이 법에 복종하는 동기는 법의 도덕성에 있지 결코 법의 강제성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형사 처벌해 오던 간통죄를 폐지하여 비범죄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부도덕한 간통행위를 비도덕화 한 것은 아닌 것과 같다.

만일 국가의 법이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한계를 넘어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법이 도덕성을 상실할 경우, 그 법은 법률의 외형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정당성이 없는 합법적 폭력내지 법을 통한 독재가 되고, 범죄자와 도덕질서 붕괴 등 그 결과 야기되는 법률적 사회적 문제까지도 막대한 과거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에서 경험한 바와 같다.

2. 부도덕한 성행위를 비도덕화한 차별금지법(안)

부도덕한 성행위를 비도덕화한 사례로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차별금지법(안)을 들 수 있다. 동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로서 23개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동성에 성행위를 대표개념으로 하는 「성적지향」(「성적지향」은 문자적으로 외부로 표출되지 아니한 어떠한 성적 성향을 의미하는 단어 인데, 인권당국은 이를 외부로 표출된 동성 간의 성행위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음)의 차별사유 적격성을 놓고 법제정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론자는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국제인권의 보편화에 따라,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반대론자는 성소수자의 정당한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권적 인권개념에 맞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합리적인 차별(동성에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비판)도 금지되어, 동성에 반대자에 대한 역차별과 동시에 동성애자에 대한 역차별 보호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아, 이로 인해 에이즈(AIDS)의 확산과 우리나라 전통윤리와 가치가 무너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논거와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2001년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지향」을 근거로 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

년도부터 19대국회까지 7회나 발의 되었으나, 반대 여론에 따라 철회되거나 폐기되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되었다.

또한 이번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 사유들 중에는 「성적지향」 외에도 성은 남녀의 성외에 다양한 제의 성이 포함한다는 「성별」 성전환 수술이 없어도 성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성별정체성」이 새로 들어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차별금지 사유들은 국산품이 아니고 서구 일부 국가의 이른바, 성혁명(sexual revolution)의 법제화 과정의 영향을 받아 도입한 수입품이다.

생각건대, 물론 인권과 윤리가 발전하고 변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은 남녀만을 말하고 혼인은 남녀의 결합에 의한 혼인만을 말한다고 하는 성기본질서는 변하지 않는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이요 윤리라 할 것이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새로운 차별금지사유들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한 번도 수용한 적이 없는 생소한 조항이다. 국민 대다수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동성에 성행위를 성적 만족을 위한 부도덕한 성행위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만일 이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입법이 된다면, 외국의 선례와 같이 반대 잡으려다 추가 심판을 태우는 격이 되지 아닐까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부도덕한 성행위의 비도덕화로 인한 위헌성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